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. 12. 6 선고 2018가단66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11. 22.

판결 선고2018. 12. 6.

주 문

1.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레등기소 1998. 10. 17. 접수 제7915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,
나.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04. 9. 8. 접수 제61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,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들에 대하여 C을 대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B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혜영

별지